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452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12. 10.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보원

별지